

제409회 임시회
'23. 6. 9.(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3. 제안사유

○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안 제4조)

○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 의상자, 의사자유족에 대한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수당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의사상자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총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3.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이들의 대가 없는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널리 알리고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정한 국가 보상 및 지원 이외에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지원사업 및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사상자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공직진출 지원 이외에 충청북도 차원의 별도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실정이므로 본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에 대한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 제8조는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보상과 중복되지 않는 도 차원의 특별위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의상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당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고, 의사자유족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및 부모 중에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되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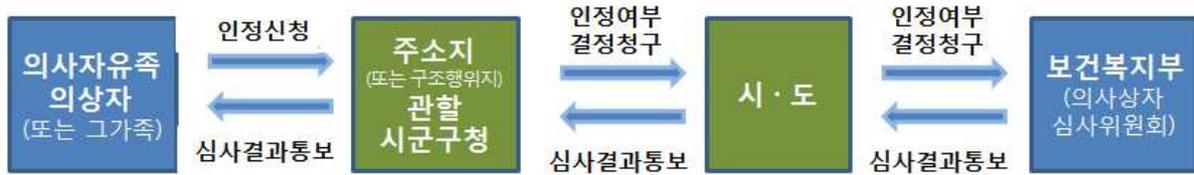
- 안 제7조는 특별위로수당의 지급액, 선순위자 선정, 지급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특별위로수당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도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가 적합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을 통해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의사상자들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사상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보다 정의로운 충북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의사상자 지원 제도 및 인정 현황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상자 국가 지원 현황

보상금*	의사자	228,823,000원('23년 기준)
	의상자	부상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차등 지급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안장(이장) 등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의사자 사이버 추모기념관('22.7.21.개설)

- <http://www.mohw.go.kr/memorial> (165명 등재)

□ 연도별 의사상자 인정 현황(전국)

연도	'7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계
계	633	38	22	25	21	17	30	5	19	11	21	11	853
의사자	422	22	13	20	11	10	10	1	8	5	10	1	533
의상자	211	16	9	5	10	7	20	4	11	6	11	10	320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7.21.)